

"음식물쓰레기 50% 줄입니다"  
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3707-9337-8/ 전송(02)3707-9349  
처리부서: 소비자보호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9층) 계장 박성래, 담당 정희숙

문서번호 소비 55160-966

시행일자 1997. 9. 19.

경유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	시	장
보존				
지역경제국장	전	결		
소비자보호과장			법무담당관 심사평	
유통지도과장			등기우편발송	
기안	정희숙		협조	

제목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조치

1.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연5100-641(97.8.20)호 및 서울지방경찰청 수사61110-3532(97.8.26)호와 관련입니다.

2.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 제1,2,3호 규정위반으로 우리시에 통보된 아래 업체에 대하여 등법 제46조제1항제20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합니다.

가. 행정처분내역

등록업체명			위 반 내 용	적 용 범 규	처분내용
상 호	소재지	대표자			
(주) 라온실업 제23호	송파구 가락2동 180-9 북국B/D 2층	정재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돈600만원 송금토록 강요</li> <li>○물건을 강제등록함</li> <li>○기망행위를 교육시킴</li> <li>○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법제45조제1항제1호 위반,</li> <li>→법제45조제1항제2호 위반,</li> <li>→법제45조제1항제3호 위반</li> </ul>	영업정지 30일 (97.9.29 -10.28)



(제2안)

수신 (주) 라온실업, 대표 정재영 귀하

제목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:

1.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연5100-641('97.8.20)호 및 서울지방경찰청수사61110-3532('97.8.

26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상기대호와 관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이첩된 내용을 검토한 바,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제1,2,3호 위반으로 동법제46조제1항제20호를 적용 동법시행령 제25조 별표1(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규정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하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처분내역

등록업체명			위반내용	적용법규	처분내용
상호	소재지	대표자			
(주) 라온실업 제23호	송파구 가락2동 180-9 부국B/D 2층	정재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돈600만원 송금토록 강요</li> <li>○ 물건을 강매토록함</li> <li>○ 기망위등 교육시킴</li> <li>○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법제45조제1항제1호 위반,</li> <li>→ 법제45조제1항제2호 위반</li> <li>→ 법제45조제1항제3호 위반</li> </ul>	영업정지 30일 ('97.9.29 -10.28)

끝.

## 서울특별시



(제3안)

수신 수신처

제목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조치

1.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연 5100-641('97.8.20)호 및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61110-3394

('94.8.1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사로 이첩된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가. 행정처분내역

등록업체명			위 반 내 용	적 용 법 규	처분내용
상 호	소재지	대표자			
(주) 라운실업 제23호	송파구 가 락2동 180-9 부국B/D 2층	정재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돈600만원 송금토록 강요</li> <li>○물건을 강매토록함</li> <li>○기망행위등 교육시권</li> <li>○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법제45조제1항제1호 위반.</li> <li>→법제45조제1항제2호 위반.</li> <li>→법제45조제1항제3호 위반</li> </ul>	영업정지 30일 (’97.9.29 -10.28)

끝.

## 서울특별시

수신처 : 서울지방경찰청장, 한국소비자보호원장.

(제4안)

수신 공보담당관  
제목 시보계제외의뢰

심사관

1.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된 업체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보계제외의뢰 하오니 계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공고(안) 1부. 끝.



## 소 비 자 보 호 위 원 장

## 공 고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7 - 440 호

### 다단계판매업자 영업정지공고
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 
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다음  
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1997년 9월 19일

서울특별시장

1. 상 호 : (주) 라은실업
2. 소재지 :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80 - 9, 부국빌딩 2층
3. 대표자 : 정 재 영
4. 영업정지기간 : '97. 9. 29. - '97. 10. 28. (30일간)
5. 영업정지사유 :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 
내지 제3호위반